

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의안 번호	5-14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

제 출 자 : 김정자 의원 외 5인

□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2007. 5. 11.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문인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” 로 함.(안 제1조)
- 나. 본 조례 제12조제3항과 제13조제3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제12조제3항을 삭제 함.(안 제12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③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2조(심의회 위원장의 직무) ① ~ ② (생략) ③<u>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2조(심의회 위원장의 직무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</p>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34조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(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